



# 2016~2017년도 행정감사 사례집 - 분야별 -

2018. 5.



**한극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 행정지원과)

# CONTENTS

<b>I</b>	제1장 수업 · 시험관리 분야 .....	1
<b>II</b>	제2장 학생 · 학적관리 분야 .....	9
<b>III</b>	제3장 복무 · 서무관리 분야 .....	13
<b>IV</b>	제4장 보안관리 분야 .....	16
<b>V</b>	제5장 회계관리 분야 .....	20
<b>VI</b>	제6장 물품 · 국유재산관리 분야 .....	27

# 제 1 장

수업 · 시험  
관리 분야

## 1.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 부적정

《지적 2건》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기준에 따르면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이면 시험실당 감독관 2명, 71명 이상이면 시험실당 감독관 3명을 배치하여 시험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 2학기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편성 시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인데도 감독관을 1명을 편성하고, 71명 이상인데도 감독관을 2명 편성하는 등 총 25반에 대하여 25명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시험 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은 2013. 1학기 ~ 2016. 1학기 출석수업시험 관리감독관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영상 강의실 근무자를 근무 당일 실시되는 출석수업시험 감독관으로 중복 편성하여 관리·감독수당을 5회에 걸쳐 총 89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휴일 근무자 각종시험 관리감독관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지역대학장은 교직원의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생서비스센터 및 도서실에서 휴일근무(09:00~18:00) 명령을 받은 근무자는 민원업무 및 학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지역대학 운영 규정 제12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학생서비스센터 및 도서실 휴일 근무자 연인원 20명에 대해 근무시간 중 실시하는 출석수업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및 계절수업 시험에 각각 1회에서 최대 4회까지 관리요원 또는 감독관으로 편성한 사실이 있음

### 3. 출석수업시험 관리요원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출석수업 시험 관리요원을 편성함에 있어 시험실 수가 2~5실인 경우에는 2명, 6~10실인 경우에는 3명을 배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1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시험을 매회 3교시까지 실시하면서, 관리요원 편성 시 시험실 수가 6~10실인 교시의 경우에는 3명을, 2~5실인 교시의 경우에는 2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3교시 중 최대 시험실 수인 6~10실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요원 3명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험실 수가 2~5실인 교시에도 1명 초과한 3명을 관리요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총 35명을 초과 운영하여 관리수당 1,07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각종 시험 관리요원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각종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관리 및 보안유지, 답안지 회수 확인, 비상 시 대처 등 원활한 시험업무 진행을 위하여 시험 당일 학년별 교시별 시험실 수에 따라 관리요원을 5실 이하는 1명, 6~10실은 2명, 11~20실은 3명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3학년도 2학기 ~ 2016학년도 1학기 각종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중간(과제물) 및 기말시험 관리요원을 편성하면서 편성기준 총인원 40명보다 24명을 초과한 64명을 편성하고, 관리수당을 지급 기준액 2,704,000원 보다 1,501,000원을 초과한 총 4,2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서류 미구비

《지적 1건》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대학의 전임교원은 재직증명서, 그 외 시간강사는 이력서, 최종학위증명서, 강의경력증명서 또는 강의 교과목과 관련된 분야 재직(경력)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2학기 미디어영상학과 3학년 방송기획제작의기초 시간강사로 위촉한 △△△ 등 9명의 시간강사에 대하여 관련 첨부서류 징구 없이 위촉한 사실이 있음

## 6.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지적 2건》

지역대학에서 출석수업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출석수업 시간강사 자격은 ①협력대학 및 타대학(2년제 포함)의 전임교원, ②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③부득이한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는 강의경력(90시간 및 2학기 이상),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으로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자 ④실험실습 관련 또는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고 위 ①~③에 해당하는 강사를 위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교과목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로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석사학위 소지자 및 실무 경력자를 학과에서 추천받을 경우 강사추천 사유서와 자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거친 후 시간 강사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 2013. 2학기 ~ 2016. 2학기까지 출석수업 시간강사 1,111명을 위촉함에 있어 위촉 공문(학장내부결재)에 강사 자격(학위) 및 해당 강사의 전공내역을 누락하는 등 강사 자격 적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석수업 시간강사를 위촉한 사실이 있음

## 7. 출석수업 시간강사 위촉 부적정

《지적 1건》

지역대학장은 출석수업 강사로 부득이하게 석사학위소지자를 위촉하는 경우, 강사 추천 사유서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교양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별 강의 가능 전공자를 출석수업 강사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5학년도~2016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및 문화교양학과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반영사항 알림(학사운영과-2985, 2015.8.11.)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강사 위촉 시 석사학위소지자를 해당 단과대학장의 강사 자격심사 승인 없이 위촉한 사실이 있으며, 2015학년도 2학기에는 교과목별 강의 가능 전공이 상이한 2명을 문화교양학과 출석수업 시간강사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 8. 각종 시험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중 출장자에게 식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1일당 20,000원의 식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대학 각종 시험(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계절수업시험)의 경우 관리·감독관 사전교육수당 21,000원/인·일(중식비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시험당일의 관리요원 및 감독관의 식비를 별도로 제공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공무원여비규정 및 우리대학 각종 시험 시행계획(연도별, 학기별)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 2학기부터 ~ 2015. 1학기까지 각종 시험(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계절수업시험)의 문답지 운(회)송자가 시험 관리 및 감독관에게 시험당일 식비를 공제 하지 않고, 식비 전액(20,000원)을 지급하여 총 213,120원(연인원 32명)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9. 출석수업 강사료 지급 부적정

《지적 3건》

출석수업 강사료는 수강인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출석수업 강사료는 전업, 비전업 강사 구분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참고로 직업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업, 비전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3 ~ 2016학년도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강사기본사항관리’ 에서 비전업시간강사로 분류된 △△△을 2013. 2학기 및 2014. 2학기에 위촉하면서 2013. 2학기에는 비전업강사로 분류하였으나 2014. 2학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전업강사로 분류하여 120,000원의 강사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비전업시간강사를 전업시간강사로 분류하여 ○○○ 등 2명에게 강사료 240,000원 및 연구보조비 60,000원, 총 300,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0. 출석수업시험 성적처리 기한 미준수

《지적 1건》

출석수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채점을 완료하고, 14일 이내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이 본인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출석수업 운영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은 2013. 2학기 미디어영상학과 ‘기업광고와브랜드커뮤니케이션’ 의 경우 채점기한을 87일 초과하는 등 총 62과목이 채점기한을 30일 이상 초과하였고, 2015. 1학기 무역학과 무역학원론은 채점확인을 81일 초과하는 등 총 316과목이 채점완료 후 채점확인을 14일 이상 초과하여 학생의 출석수업시험 성적 열람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 11. 각종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부적정

《지적 1건》

불가피한 사유로 각종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결시사유 인정범위는 법정전염병(본인의 질병) 국외출장(공무상 국외출장), 비상근무(공무원의 비상근무) 등으로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업성적평가처리규정 제3조 및 2013학년도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 2학기 중간시험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결시자 성적인정처리 승인 과정에서, 결시사유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연간 6회 이상 시행하는 시험(신HSK)”을 응시한 중어중문학과 △△△ 등 2명에 대해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을 승인하여 성적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음

## 12. 출석수업대체시험 성적 처리 부적정

《지적 1건》

유아교육과 시험감독관은 시험응시여부 확인 시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1, 2급)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증 미소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성적처리 담당자는 동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전공과목 응시자에 대해 성적을 무효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6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16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유아교육과 1학년 유아발달 교과목 시험 감독관은 교육학과 ○○○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과목을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성적처리 담당자는 전공과목 성적을 무효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3. 출석수업 답안지 판독 및 성적처리 부적정

#### 《지적 1건》

OMR 답안지 판독시 지역대학장이 지정한 직원 3명 이상의 입회하에 시험장별, 학과별, 교시별 응시자 수와 OMR 답안지 실제 매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판독결과 대조확인) 처리시에도 OMR답안지 매수와 대조리스트 인원수가 일치하는지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학업성적평가처리지침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판독 및 성적처리과정에서 시험장별, 학과별, 교시별 응시자 수와 OMR 답안지 실제 매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과별로 1학년 ~ 4학년까지 한꺼번에 리딩하여 답안지 인계매수와 판독 매수가 불일치 하였고, 시험 결과 처리(대조)시에도 OMR답안지 매수와 대조리스트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교육학과 3학년 △△△ 답안지 1매가 누락되어 성적이의신청 처리를 통해 성적을 인정한 사실이 있음

# 제 2 장

학생 · 학적  
관리 분야

## 1. 교내 근로장학생 선정 부적정

《지적 3건》

교내 근로장학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학생 수혜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 중 ‘학생회임원 학비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5 ~ 2016학년도 교내근로장학생 관리 운영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학년도 1학기 학생회임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행정학과 △△△을 ‘2015학년도 1학기 근로봉사활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장학생 중도 포기 이전까지 약 3개월간(2015. 3. 1. ~ 2015. 5. 13.) 총 2,177,4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1학기 학생회임원 전액 장학금’을 받은 국문학과 ▲▲▲을 ‘2016학년도 1학기 근로봉사활동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근로봉사활동 장학금 총 1,940,000원 (3월 : 970,000원, 4월 : 9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학생주소록 관리 부적정

《지적 2건》

학생주소록을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사용(열람)하는 교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주소록 사용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한 후 사용 종료된 주소록은 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폐기 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1조 및 학생주소록 관리 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학생과로부터 총 9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2013 ~ 2015학년도까지 학생과로부터 총 7건의 신·편입생 합격자 명단을 인수 받았으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서약서, 사용대장, 폐기 현황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관리한 사실이 있음

### 3. 시군학생회 운영지원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시·군학생회 운영비는 집행 범위를 학생회 활동 공간(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학습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소모품 구입, 기타 학생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식비·회의비·현금지급은 불가하고 집행범위를 벗어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그 집행액을 반납 처리하거나 차기 운영비에서 차감 하게 되어 있음

근 거 2013~2016학년도 학생지도 기본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1분기~3분기 ◇◇□□△△ 학생회 운영비에서 비품인 컴퓨터(420,000원), 프린터(291,600원)를 구매하고, 2015학년도 3분기 부안학생회 운영비에서 비품인 모니터(200,000원)를 구매하였음에도 집행액 반납 처리 또는 차기 운영비를 차감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시학생회에서 2013학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비 집행범위를 벗어난 학생회장 유류비로 14건, 총 640,000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다음 분기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지역 총학생회 회칙 관리 소홀

《지적 1건》

지역학생회장은 재학 중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1.7이상인 자,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학생지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대학은 건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 자치활동 지도, 학생회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학칙 제59조

#### < 사례 1 >

○○지역대학 「총학생회 회칙(2009.10.22., 개정)」의 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살펴본 결과, 취득학점 및 인정학점이 72학점이상인 자, 학생회비 납입자, 현재 재학 중인 자로만 규정하여 학칙에 따른 자격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는데도, 지역대학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외부 장학금 대상자 추천 부적정

《지적 1건》

타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은 자, 2개 학기 4개 과목 이상 연속 이수 예정인 자 등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4. 2학기 ~ 2015. 1학기 민혁현 문화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14. 2학기 ~ 2015. 1학기까지의 장학생 추천자 명단을 살펴본 결과, 졸업으로 인하여 1개 학기만을 등록 가능한 자, 우리 대학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자 및 국가장학금을 받은 자 등 5명의 부적격 학생을 민혁현 문화장학재단에 추천(장학금: 1인당 300,000원)하여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총 604,700원이 중복지급 된 사실이 있음

## 6. 학생지도 멘토링 부적정

《지적 1건》

계획서 및 실적물을 제출한 교직원에 한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전액 환수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6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는 자신이 이메일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직접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학생지도 멘토링 이메일을 대신 보내도록 부탁하여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은 2016학년도 학생지도 공통지표(멘토링) 100점을 통해 50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제 3 장

복무 · 서무  
관리 분야

## 1. 학생서비스센터 등 특별근무 부적정

《지적 1건》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자는 근무장소에서 학사상담 및 도서 대출·반납 등 학생서비스를 제공하되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시간을 변경할 시 사전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지의 안전한 보관 및 보안유지를 위해 특별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지역대학 2014 ~ 2016년 근무 명령 및 자체 2016.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문제지 보관 및 회송 계획 수립

### < 사례 1 >

○○지역대학 △△△은 학생서비스센터 근무일인 2014. 6. 7.(토)에 출석수업시험 관리요원 업무를 수행(13:00 ~ 15:50)하여 관리수당 금9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특별근무를 이유로 2014. 6. 12.(목)에 대체휴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은 2016. 2학기 출석수업 대체시험 문제지 보관을 위해 2016. 11. 26.(토) 07:00 ~ 23:00까지 특별근무자로 지정되었으나, 당일 09:00 ~ 15:50까지 출석수업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금128,000원)하여 문제지 보관 및 보안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당직근무자 시험관리요원 편성 부적정

《지적 1건》

지역대학장이 지정한 당직근무일에는 방호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지역대학의 '2014~2017년도 학생서비스센터, 영상강의실, 당직실, 조교실 근무편성표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학년도 2학기 출석수업대체시험' 시행일에 당일 방호업무 당직 근무자를 시험 관리요원으로 편성하여 금149,000원을 지급하는 등, 방호업무 당직 근무자를 각종 시험 관리요원으로 총 13회 편성하여 총 2,059,000원의 시험관리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금품등 수수 부당

#### 《지적 1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근 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사례 1 >

○○지역대학 △△△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용역업체 소속 □□□의 권유로 간 노래방 유흥비 35만원을 □□□가 결제하였음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후 □□□에게 전액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현금 20만원을 돌려준 사실이 있음

### 4.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 《지적 1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8.02.14. 이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업무를 우리대학이 수탁 받아 해당 시험을 수행하여 오고 있는 바, 수탁 받은 업무에 필요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위탁한 기관에 예산을 요구하여 운행함이 마땅하므로, 교직원의 공용차량 이용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위탁한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이용하여야 함

근 거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2년부터 2016학년도 1학기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지역대학의 공용차량을 시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 34회(독학사 답안지 인계 15회, 독학사 시험 유인물배부 및 업무협의 8회, 독학사 답안지 파쇄 10회, 독학사시험지 운회송 1회)에 걸쳐 32일 5시간 정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제 4 장

보안관리  
분야

## 1. 문서보안 취급 및 관리 소홀

### 《지적 2건》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소각 용해 등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비밀의 파기가 끝나면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각급기관은 매월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소유비밀문서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8호, 2013.5.13) 제44조, 제56조  
          및 제74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13년부터 분임보안담당관(지역대학장)의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13년~'16년 생산한 시설방호 계획 수립을 대외비 문서로 취급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13년~'14년 수신한 보안업무 추진 계획 알림과 '12년 생산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및 '13년~'15년 생산한 시설방호 계획 수립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일 뿐 아니라 비밀관리기록부에 파기 집행자 및 입회자 확인을 동일인으로 하였으며, '13년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일반보안 진단 시 대외비 보유현황(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 보안교육 실시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 문서보안 취급 및 관리 소홀 II

### 《지적 1건》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진단일지, 대외비관리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교체되는 때에는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근 거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148호) 제4조, 제44조, 제45조, 제56조,  
          제57조 및 보안업무처리규정 제9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년도 자체 보안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14년도 보안업무추진계획서에 최종결재권자(지역대학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으며, 보안진단일지, 대외비 관리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

또한, 보안담당관 교체 시 대외비 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안전지출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파기 기한이 경과한 대외비문서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암호화 소홀

《지적 1건》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제1항

#### < 사례 1 >

○○지역대학 ○○○ 등 6명은 해당지역대학에서 생산한 전자결재 문서에 367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안정성 도구(암호화 등) 없이 생산 및 관리한 사실이 있음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적정

《지적 1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보관할 경우 당직실이나 경비실 등에 보관하고, 동 화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 열람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우리 대학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2016.2.16.제정) 제13조 및 제15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총 8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면서, 동 화상정보를 당직실이나 경비실 등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학생서비스센터 한쪽에 비치하여, 접근 권한을 받지 않은 자의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5. 시설방호업무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지역대학 시설방호 책임자는 지역대학장으로 되어 있고,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보안업무처리규정 제12조, 지역대학 운영규정 제4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시설방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 시군학습관 및 별관 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을 누락한 채 지역대학 시설에 대해서만 방호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용역업체와 시설 방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23:00까지 경비근무자(용역직원)가 근무하고 23:00부터 익일 08:00부터는 무인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역대학 경비근무자의 퇴근시간을 확인한 결과, 퇴근시간 미준수 일수가 총 736일(월 평균 18.4일)이나 되고, 1시간 이상 조기 퇴근일은 총 31일이 되는데도 경비근무자의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6. 대체휴무 실시 부적정

《지적 1건》

근무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 사례 1 >

○○지역대학 △△△는 2015. 9. 5.(토)에 실시된 가정학과 4학년 패션마케팅 교과목 영상강의 운영을 위해 초과근무 사전 승인(16:00~18:00)을 받았으나, 당일 지문인식시스템에는 당사자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이 등록되지 않았고, ‘출석수업 일일 근무일지(2015.09.05.)’에는 영상강의 담당자인 □□□이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 초과근무 사전 승인일인 2015. 9. 5.(토)에 대한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동 초과근무 신청 건에 대해 2015. 9. 14.(월), 9:00~12:00까지 대체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제 5 장

회계관리  
분야

## 1.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 3건》

입시수당은 신·편입생 정시모집 등 입시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2013~2016학년도 입학전형 업무 추진계획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출장, 공가, 연가 등으로 입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 등 6명에게 총 309,000원의 입시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2 >

○○지역대학에서는 출장·공가 등으로 입시업무를 전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 등 5명에게 총 130,000원의 입시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사례 3 >

○○지역대학은 출장 및 대체휴무 등으로 전일 입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 등 5명에게 총 200,000원의 입시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 1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교육훈련 시에는 등록일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공무원 여비규정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공용차량 이용 및 교육훈련 출장 건 등 22건에 대한 여비를 감액 없이 지급하였고, 출장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지역대학 현안사항 협의’ 등 4건의 식비 일부를 감액 없이 지급하여 11명에 대해 총 286,640원의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II

《지적 1건》

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대학 ‘제1회 총장배 교직원 탁구대회 출장 협조 요청 (행정지원과-5149, 2016.07.13.)’에 따르면 출장비를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제1회 총장배 교직원 탁구대회 출장 협조 요청 (행정지원과-5149, 2016.07.13.)’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홍보’ 를 이유로 2015. 12. 23.에 공용차량을 5시간 사용한 2명에게 각각 1만원을 감액하지 않은 채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였고, 2016. 8. 19.에 ‘총장배 교직원 탁구대회’ 에 참석한 5명에게 일비·식비를 지급하는 등,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7명에 대하여 출장여비 총 225,00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증명발급 수수료 세입처리 소홀

《지적 1건》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현금 또는 증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학회계 수입금도 이에 준하여 지체 없이 수납관리를 하여야 함

근 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제증명수수료 등’ 총 6건(784,550원)의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액을 최소 5일에서 최대 184일까지 지체하여 대학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 5. 증명발급 수수료 세입처리 부적정

《지적 1건》

국립학교에서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현금 등을 지체 없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학회계 수입금도 이에 준하여 지체 없이 수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및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3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 8월 증명수수료 수입액이 25,500원임에도 징수결의는 19,800원만 실시하는 등, 2014. 8월부터 2015. 2월까지 총 113,700원의 수입액을 누락하여 징수결의한 사실이 있음

## 6. 예산 조기집행 소홀

《지적 1건》

예산집행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근거 '2016학년도 대학회계 조기집행 추진계획' 관련자료 제출 요청(재정지원과 -2039, 2016.03.29.)

### < 사례 1 >

○○지역대학의 2016학년도 대학회계 조기집행 관련 실적을 점검한 결과, 1·2분기 조기 집행 실적을 미제출 하였고, 1·2분기 집행계획률 67%(14,500천원) 대상사업인 '물품및재산 관리(21,600천원/임차료 제외)'의 집행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집행률 0%) 사실이 있음

## 7. 공공요금 납부 소홀

《지적 1건》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고금관리법 제4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년 8월분 도시가스요금과 2016년 2월분 도시가스요금, 2016년 11월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발생한 3건의 연체료 3,920원을 대학회계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8. 일반회계 회계연도 내 집행 소홀

《지적 1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년 11월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정시모집 인터넷 접수’를 위한 일반회계 예산 3,992천원을 입학학적과로부터 배정받고, 2015년 12월 22일 재정지원과에서 발송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철저 및 집행 마감기한 알림’ 공문을 접수하였음에도 배정받은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시켰으며, 해당 사업의 집행을 위해 2016년 2월에 입학학적과로부터 대학회계 예산 3,875천원을 조정배정 받아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9.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지적 1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는 자에게는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계절수업시험 문제지 문답지 운송 및 보안관리(2014.7.18.)’를 이유로 근무지의 출장을 다녀온 후 초과근무를 실시한 ○○○에게 식비를 포함한 출장여비 3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특근매식비 6,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4. 7. 18.부터 2016. 12. 9. 까지 식비를 포함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29건의 근무지의 출장 건에 대해 특근매식비 총 17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0. 용역계약 입찰공고 소홀

《지적 1건》

용역계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근 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시설물 용역 계약(계약기간: 2016. 3. 1.~2017. 2. 28., 계약금액: 금61,093,000원) 시 입찰공고 등에 보험료 등 사후정산 내용을 누락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총 1,317,554원의 보험료(추정액)를 정산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

## 11. 용역계약 사후정산 부적정

《지적 1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여야 함

근 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 부터 제94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2014학년도(계약기간 2014. 3. 1. ~ 2015. 2. 28.)와 2015학년도(계약기간 2015. 3. 1. ~ 2016. 2. 29.) 총 6건의 시설관리(청소, 방호, 기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명시를 하였음에도 6건의 계약 건 모두 국민건강보험료 등 총 8,823,760원을 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 6 장

물품 · 국유재산  
관리 분야

## 1. 물품관리대장 물품 미등재

《지적 1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인 물품관리대장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구매한 물품 지문인식기 등 9개 품목(수량 62, 취득금액 15,541,450원)에 대하여 물품관리대장에 등록도 하지 않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지적 1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까지 선납하도록 되어 있음

근 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사례 1 >

○○지역대학에서는 2015년도 구관 무상사용기간 갱신허가(2015. 6. 1. ~ 2016. 12. 31.) 시, 사용자로부터 갱신 만료일 1개월 전(2015. 4. 30.)이 아닌 11일이 지난 2015. 5. 19.자로 갱신 신청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같은 사안으로 무상사용을 유상사용으로 갱신 허가(2016. 1. 1. ~ 12. 31.)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수익 시작 3일 전(2015. 12. 29.)에 갱신 신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 시작 후에 사용료가 납부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6년도에는 자동판매기설치 운영 관련 사용·수익 허가를 실시(2016. 1. 1. ~ 12. 31.) 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부터 허가 시작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2016. 1. 7.에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2016. 1. 8.)한 사실이 있음